## 영암군 고시 제2017 - 70호

##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

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(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)에 따라 "낚시 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"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.

2017년 8월 23일

# 영 암 군 수

#### 1. 개정이유

「정부조직법」개정(2017.07.26)으로 '해양경비안전서'가 '해양경찰서'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명을 변경코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타 법 개정에 의한 '해양경비안전서'를 '해양경찰서'로 수정
- 나. 타 법 개정에 의한「정신보건법」을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수정

## 3. 별 첨

- 가. 신·구 조문 대비표
- 나. 개정고시 전문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안전운항의 의무 등) ⑥ 보호자를	제3조(안전운항의 의무 등) ⑥
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,	
「정신보건법」제3조(정의) 제1호에 따	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
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	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
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된다.	법률」)
   제6조(낚시어선업자·선원·승객의 준수사	제6조(낚시어선업자·선원·승객의 준수사
항)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	항) ① (현행과 같음)
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	, , ,
1 / 以	1 /처체기 가야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낚시어선업자·선원은 낚시장소에	2
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	
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	
악화 등 상황발생 시 승객을 안전	
하게 대피조치 하여야 하며, 긴급	
상황 시 <u>해양경비안전서(</u> 122), 소방서	<u>해양경찰서</u>
(119)등에 요청하여야 한다.	
3. • 4. • 5. • 6. • 7. • 8. • 9. (생략)	3. · 4. · 5. · 6. · 7. · 8. · 9.(현행과 같음)

##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.) 제35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낚시어선업자·선원·승객의 안전은 물론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, 낚시 관련 산업 및 농·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25조(낚시어선업의 신고)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영암군에 신고한 낚시어선으로 전라남도 연안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"그 낚시어선의 승객" (이하 "승객" 이라 한다.)에 적용한다.

- 제3조(안전운항 의무 등)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승객에게 위해(危害)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.
  -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.
  - ③ 출항 전 선체・기관・통신・구명장비 등 안전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 복용 상태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(혈중 알콜 0.03퍼센트 이상)에서는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 상태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⑥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」제3조(정의)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제4조(수질오염방지) 낚시어선업자·선원·승객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① 해상에 유류·분뇨·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며, 쓰레기 종량제에 사용하는 봉투를 비치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집하여야 한다.
  - ② 과다한 밑밥(일명 "떡밥")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  - ③ 낚시도구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  - ④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한다.
- 제5조(수산자원의 보호) ① 낚시어선업자는 이용 승객으로 하여금 「수산 자원관리법」제14조(포획·채취금지)에 따라 포획금지 체장(체중) 이하의 수산동식물을 포획해서는 아니 되며, 만약 포획될 경우에는 즉시 방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- ② 낚시어선업자는 관내 어촌계에서 소유 ·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.
- 제6조(낚시어선업자·선원·승객의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낚시어선업자·선원은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킬 경우 승객이 준수할 사항을 교육시킨 후 운항하여야 하며, 승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- 2. 낚시어선업자·선원은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 발생 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조치 하여야 하며, 긴급 상황 시 해양경찰서 (122), 소방서(119)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.
  - 3. 사고발생 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련기관에 보고하고,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4. 낚시어선업자·선원은 다른 시·군 관할 수역에 승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(수역·육역)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가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(안전운향 등을 위한 조치)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.
  - 5. 낚시어선업자·선원은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배부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선내에 쓰레기봉투 또는 휴지통을 비치하여야 한다.
  - 6.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  - 7.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
- 8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무인도,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싣고 입항하여야 한다.
- 9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.
- ②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, 출항 시 및 승선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  - 2.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「수산자원관리법」제14조(포획·채취 금지)에 따라 포획 금지 체장(체중) 이하의 수산 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  - 3. 승객은 승선 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- 4. 승객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- 가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   - 나.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   - 다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.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를 사용하는 행위
    - 마.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취사, 야생 동ㆍ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  - 5.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 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응하여야 한다.
  - 6. 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.

- 7.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.
- 8.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 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제7조(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방법)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32조 (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)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고시의 폐지) 이 고시의 시행 전 영암군 고시 제2013-15호 (2013.07.03.), 영암군 고시 제2015-43호(2015.08.19)는 폐지한다.

## 【별표】

##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 승객 준수시항 게시방법

1. 게시방법

가. 재 질 :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

나. 색 상

① 글 씨 : 검은색

② 바 탕 :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- 흰색 / 승객준수사항 - 노란색다.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

당해 낚시어선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정한 크기로 조정하되,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아래(게시방법의 예시)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

2. 게시판의 부착장소 : 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

#### 3. 게시방법의 예시

####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승선정원 명

#### 승객 준수사항

- ※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(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) 제2항에 따라 영암 군수가 고시한 낚시 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.
- 1.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, 출항 시 및 승선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.
- 2.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(포획·채취금지)에 따라 포획 금지 체장(체중) 이하의 수산 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합니다.
- 3.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4. 승객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가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- 나.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- 다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- 라.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를 사용하는 행위
- 마.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취사, 야생 동·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- 5.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 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.
- 6. 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합시다.
- 7.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.
- 8.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.

-	11	_
	- 1 1	

\_\_\_\_